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11. 15.(월)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양문석 위 원 (1인)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 1)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10-66-271)
 - o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54차 위원회(10. 9. 8)보고 후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친「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① 도매제공 대상 (안 제3조)
 - SKT의 이동통신서비스 중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를 대상으로 하되,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협상에 따름
 - ② 자가소비 제한 (안 제4조)
 -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SKT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③ 이용약관 마련 (안 제5조)
 - SKT는 도매제공 대가, 단일 협상창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MVNO 사업자에게 공개
 - ④ 재제공(再提供) 제한 (안 제10조)
 -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SKT가 허용
 - ⑤ 대가산정 기준 등 (안 제23조~제28조)
 - MVNO 사업자의 설비보유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31%~44%를 할인하되, 구체적 대가수준은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
 -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방통위는 SKT 및 MVNO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
 - ※ 당초안에는 SKT가 다량구매할인을 자율 적용토록 하였으나,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다량구매할인 개입 근거를 명확히 함

2)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 (2010-66-272)

- o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55차 위원회('10. 9. 15) 보고 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친「전파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①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설정 등 (안 제14조, 제14조의2)
 - 헐값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 및 이용권의 범위, 동일 용도의 주파수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② 주파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의3)
 - 방송통신위원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합의하여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고시에 위임
- ③ 무선국 검사제도 완화에 따른 기준 마련 (안 제42조의2)
 - 검사대상 무선국 중 전파에 혼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에 대해 표본검사를 적용
- ④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인증·등록 대상 규정 (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 기자재 유형에 따른 기존의 인증제도 [형식승인(유선), 형식검정 등록(무선), 전자파 적합등록(정보기기)] 를 기자재의 방송통신시설과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에 따라 적합성 인증 및 등록제도로 변경함에 따른 기준 마련
- ⑤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DMB) 보조국 허가규제 완화 (안 제21조)
 -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과 지하·터널 내에 설치하는 지상파 DMB보조국의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개설하도록 전환
- ⑥ 재난관련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안 제44조)
 - 홍수 예·경보, 조난구조,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의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 ⑦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명칭, 출력 및 허가유효기간 정비 (안 제36조, 제57조)
 - 소출력방송국의 명칭을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개정하고, 출력을 1W이하에서 10W이하로,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 ⑧ 환경친화적 무선국 촉진을 위한 규정 마련 (안 별표 8, 9, 10)
 - 환경친화무선국의 설치비율에 따라 1~10% 범위이내에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 ⑨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안 별표 23 내지 28)
 - 행정제재처분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반 행위가 재차, 삼차 반복되는 경우의 제재기준을 마련
 - ※ 법제처('08.10월) 및 방통위 규개특위('09.12월) 권고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무선국 수의 범위(1~5, 6~10, 11국 이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무선국 1국당 과태료 금액으로 개선
- ⑩ 기타 (안 제77조의4 내지 14, 제88조 등)
 - 적합성평가 변경·면제 절차, 시험기관 지정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가하며, 개정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규정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개정

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에 관한 건 - (2010-66-273)

o 황철증 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 도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o 인증체계 구성 및 운영 주요 내용

① 인증체계

-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정기관, 인증위원회, 인증기관을 분리 하여 운영
- ·인증제도를 관리·감독하는 인정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
- ·산업계, 학계, 정부의 전문가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결과를 심의
-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객관성 확보

② 인증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은 기업 자율제도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신청하고, 인증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

③ 인증지원

- 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요구사항만 통제항목으로 구성하여 가이드 형태의 자가 진단 도구 제시
-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서버 및 정보보호 컨설팅 무료 등의 지원 사업 추진
- ·인증 신청시 수수료 감면 및 포상 제도 마련

④ 인증절차

-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의 심사 절차를 준용한 4단계로 구성

·준비 단계 : 인증 절차 상담 및 신청 서류 준비

·심사 단계: 관리체계 운영 검증을 위한 문서 심사 및 현장 심사

·인증 단계 : 인증심사 결과를 근거로 인증 적합성 심사

·사후관리 단계 : 인증 취득후 1년 단위로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

⑤ 심사원 양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수행하고 시험을 통해 심사원 선발
- ·심사원 등급은 심사 경력에 따라 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 등급별로 운영
- ⑥ 심사항목 구성
 - 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과 법률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3개 분야의 119개 통제항목, 325개의 세부점검 사항으로 구성

4)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안)에 관한 건 - (2010-66-274)

o 황철증 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추가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함.

사. 보고사항

1) 2010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o 추가 검토 후 재상정 하기로 함.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11. 18(목),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5)